

의안번호	제45호
의결년월일	2005. 8.19.

의
견
청
취

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2005. 8. 19

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변경 결정(안)

의안번호	제45호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05. 8. 19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경상남도고시 2004-11호(2004. 5. 3)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되어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하수도 결정 면적으로는 수처리 구조물 설치부지가 협소하여 곤양면 대진리 839번지 일부 토지를 추가 편입 하수도 시설을 증가시켜 구조물 상부의 공원화 시설과 체육 및 휴식시설을 조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하여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여 같은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안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①	하수도 (하수종말 처리장)	곤양면 대진리 856번지일대	3,940	증 1,790	5,740	2004.5.3	

3. 법적근거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

4. 의견청취 안건 : 별첨

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변경 결정(안)

1.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변경(결정)조서

가. 하수도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하수도 (하수종말 처리장)	곤양면 대진리 856번지일대	3,940	증1,790	5,740	2004.5.3	

나 하수도 변경 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 설 명	변경내용	반 경 사 유
1	하수도 (하수종말 처리장)	면적증가 (3,940→5,740 증 1,790m ²)	수처리 구조물 설치부지 협소로 인한 면적증가

2.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변경(결정)도

가. 도시계획시설 위치도(S = 1 : 50,000)



나. 변경(결정)도

